무허가축사 양성화 시급하다

-홍성군 30여 양축농가 등 충남일대 무더기 고발-

양축농가들은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일제 단속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준을 세워 이를 양성화 시켜주는 한편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도 계몽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최근 무허가축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홍성군은 건축법 위반 및 농지불법 전용 등을 가려내기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1주일동안 1차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축사시설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홍성군 일대에는 양돈 5농가를 포함한 낙농·양계 등 30여 양축농가가 농지불법 전용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으며 보령 19농가, 서천·예산 20농가 등 총 40여 양축농가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되는 등 충남일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단속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무허가축사 고발대상은 5~6년된 축사가 있는가 하면 2~3년된 축사도 있고, 또 이들 양축가들은 영세규모에서부터 대규모농장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양돈협회 홍성지부, 홍성낙농인연합회, 홍성낙농회, 홍성계우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지난 7월 4일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공동 작성하여 500여 양돈농가를 비롯한 2,300여 양축농가로부터 서명을 받아 현재 홍성군수, 경찰서장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현재 축사의 90% 정도가 무허가축사이기 때문에 선량한 양축농민 대부분이 범법자라는 죄책감속에 생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취해 양축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구했다.

진정서에서 또, 「양축농민의 96%가 영세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어 까다로운 농지관계법·산림관계법 등의 절차를 밟아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허가축사 문제는 법 이전의 생존권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으로 정책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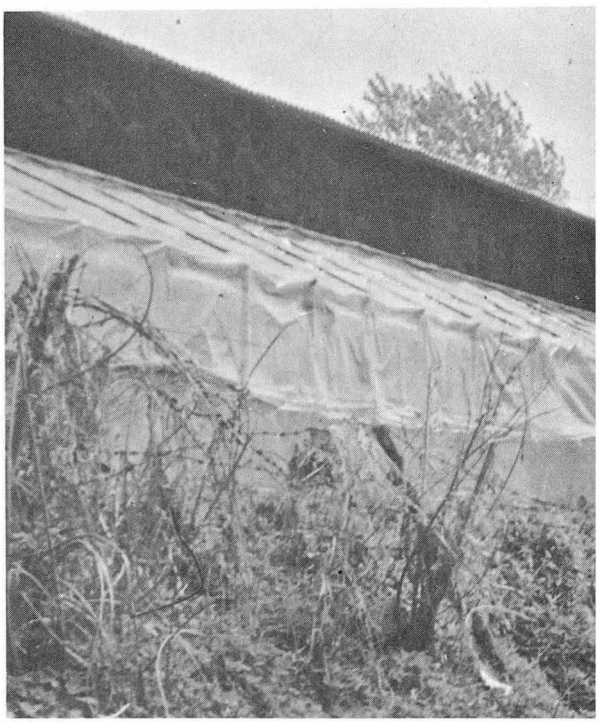

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보령군 축산업자 1,000여명도 「축산물 가격침체와 개방화 정책에 따라 양축농가들이 의기소침하던중 설상가상으로 불법건축물 일제단속으로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서, 현행법으로 적법 절차를 거쳐 축사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같이 규제만 강화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제한조치를 완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한 진정서를 작성, 관계요로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수명의 축산업자가 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졌던 사실이 있다. 양축농가들은 불안해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든 차에 홍성지청으로부터 폐수처리 시설만 완벽하게 설치하면 관대하게 행정처리해 준다는 통지문이 군에 전달된 사실을 전해 듣고 엄동설한에도 표준설계도에 의한 정화시설 및 간이정화조시설 등을 거의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조치만 강행하고 있는 것은 생존권을 빼앗는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양축농가와 관계전문가들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속하기에 앞서 일정기간을 두고 지도 계몽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농지전용에서 무허가축사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무허가축사가 일부 양성화 되었으나, 축사 부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농지전용에 따른 과중한 농지조성기금 부담으로 양축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법규에 따른 지식이 어두운 양축업자들이 특별조치법의 시행간내에 무허가축사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축산인의 90% 이상이 범법자라는 소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허가없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을 현행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 1천㎡이하에서 1천5백㎡이하로 하는 한편 농지전용의 허가권을 절대농지는 현행 1만㎡이하에서 3만㎡, 상대농지는 6만㎡이하에서 15만㎡이하로 확대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의 농지전용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법운용상 허가중복 사항 등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하고, 정부와 업계·학계의 공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축사는 임의로 짓도록 하되, 일정규모가 넘은 축사도 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누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축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취재 : 곽 삼 섭 기자〉